2026 박문각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예상문제집 정오표

<table>
<tr><th>페이지</th><th>수정 전</th><th>수정 후</th></tr>
<tr><td>124p</td><td>1. 이의신청
15일 이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→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 →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신청</td><td>1. 이의신청
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→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 →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신청</td></tr>
<tr><td>124p</td><td>2. 분쟁조정
③ 분쟁조정 세부 절차
<table><tr><td>이의신청</td><td>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,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</td></tr><tr><td>이의신청 회신</td><td>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을 회신
•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</td></tr><tr><td>재심청구</td><td>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</td></tr></table></td><td>2. 분쟁조정
③ 분쟁조정 세부 절차
<table><tr><td>이의신청</td><td>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5일 이내</td></tr><tr><td>이의신청 회신</td><td>• ~~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수용 여부 등을 회신~~
•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</td></tr><tr><td>재심청구</td><td>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155p</td><td>4. 이의신청 기한 등
<table><tr><td>이의신청 기한</td><td>이의신청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, 또는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 게 이의신청</td></tr><tr><td>결과 회신</td><td>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</td></tr><tr><td>재심청구</td><td>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</td></tr></table></td><td>4. 이의신청 기한 등
<table><tr><td>이의신청 기한</td><td>이의신청의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또는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 게 이의신청</td></tr><tr><td>결과 회신</td><td>이의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15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</td></tr><tr><td>재심청구</td><td>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의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160p
31번</td><td>U기업은 모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~ 이를 안 날로부터 18일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. ~</td><td>U기업은 모 공기업과의 계약에서 ~ 이를 안 날로부터 28일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. ~</td></tr>
<tr><td>160p
33번</td><td>W기업은 공기업과의 계약 건에 대해 ~ 회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5일 후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.</td><td>W기업은 공기업과의 계약 건에 대해 ~ 회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5일 후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.</td></tr>
<tr><td>358p</td><td>⑦ 낙찰하한율<table><tr><td>중기간
경쟁제품</td><td>조달청
기준</td><td>…</td><td>89.995</td></tr></table></td><td>⑦ 낙찰하한율<table><tr><td>중기간
경쟁제품</td><td>조달청
기준</td><td>…</td><td>87.995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541p
10번</td><td>[정답] ③</td><td>[정답] ②</td></tr>
<tr><td>541p
11번</td><td>[정답] ②</td><td>[정답] ③</td></tr>
<tr><td>567p
31번</td><td>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. 인지한 날부터 18일 후 신청한 경우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</td><td>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. 인지한 날부터 28일 후 신청한 경우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</td></tr>
<tr><td>567p
32번</td><td>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다. 19일 후 신청한 경우 기한 내 신청에 해당하여 인정된다.</td><td>이의신청은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. 19일 후 신청한 경우 기한 내 신청에 해당하여 인정된다.</td></tr>
<tr><td>567p
33번</td><td>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회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. 25일 후 청구는 기한을 초과한 것이다.</td><td>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회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. 35일 후 청구는 기한을 초과한 것이다.</td></tr>
</table>